

신용정보관리규정

제 정 : 2011. 4. 25

1차 개정 : 2015. 10. 8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이용, 신용정보주체 보호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신용정보”는 금융거래(보험·보증 포함) 등 상거래에 있어서 거래상대방에 대한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를 말한다.
2. “개인신용정보”는 신용정보중 개인의 신용도와 신용거래능력 등을 판단할 때 필요한 정보로서 제1호에서 정한 신용정보 중 기업 및 법인에 관한 정보를 제외한 개인에 관한 신용정보를 말한다.
3. “신용정보주체”는 신용정보로 식별되는 자로서 신용정보의 주체가 되는 자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공사업무상 고객과의 상거래에서 발생하는 국내 신용정보주체의 신용정보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2 장 신용정보의 수집·조사

제4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원칙) ① 신용정보를 수집·조사 및 처리하는 경우에는 공사의 업무 수행 범위내에서 수집·조사 및 처리의 목적을 명확히 하여야 하며, ‘신용정보법’ 및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그 목적 달성에 필요 최소한의 범위에서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단을 사용 하여야 한다.

② 개인신용정보를 수집하는 때에는 해당 신용정보주체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5조(수집·조사의 제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수집·조사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국가의 안보 및 기밀에 관한 정보
2. 기업의 영업비밀 또는 독창적인 연구개발 정보
3. 개인의 정치적 사상, 종교적 신념, 그 밖에 신용정보와 관계없는 사생활에 관한 정보
4. 확실하지 아니한 개인신용정보
5. 기타 법령 등에 따라 수집이 금지된 정보

제6조(수집·조사 및 처리의 위탁) ①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의뢰인의 동의를 받아 신용정보의 수집·조사를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공사의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를 신용정보법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다른 신용정보회사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 3 장 신용정보의 체계적 관리 및 제공·이용

제7조(신용정보의 정확성 및 최신성의 유지) ① 신용정보의 정확성과 최신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상시적으로 관리하는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신용정보의 상시적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매 등을 통해 외부로부터 신용정보를 입수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8조(신용정보전산시스템의 보안대책) 신용정보전산시스템에 대한 제3자의 불법적인 접근, 입력된 신용정보의 변경·훼손 및 파괴 등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신용정보전산시스템 관리담당부서장(이하 “IT담당부서장”)은 기술적·물리적 보안대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세부사항은 ‘신용정보관리요령’(이하 “요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

제9조(신용정보관리책임의 명확화) ① 이 규정에서 정한 신용정보의 관리 및 보호에 관한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 규정 관장 임원(이하 “신용정보담당임원”이라 한다)을 신용정보관리·보호인으로 지정·운영한다.

② 제1항의 신용정보관리·보호인의 수행업무에 대하여는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0조(신용정보 제공·이용) ① 공사업무상 고객과의 상거래를 위하여 공사업무와 관련하여 얻거나 만들어 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신용정보를 제공받아 공사의 업무에 이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세부사항은 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 4 장 신용정보주체의 보호

제11조(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 ① 신용정보담당부서장은 공사가 관리하는 신용정보의 종류, 이용목적, 제공 대상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홈페이지 담당부서장에게 통보하여 동 사항들을 홈페이지에 공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2조(개인신용정보의 제공·활용에 대한 동의) ① 개인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타인으로부터 조회 또는 제공받으려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으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3조(신용정보주체의 자기정보 통제권 보호) ① 신용정보주체가 자신과 관련된 신용정보와 관련하여 외부로 제공된 사실, 공사업무상 고객과의 상거래와 관련한 상거래 거절 근거 개인신용정보, 본인정보의 열람·정정, 개인신용정보 제공·이용 동의 철회, 신용조회사실의 통지, 개인신용정보의 삭제 등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본인임과 사유의 타당성 등을 조사한 후 처리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시행에 대한 세부사항은 요령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4조(업무 목적 외 누설금지 등) ① 임직원이거나 임직원이었던 자는 업무상 알게 된 타인의 신용정보 및 사생활 등 개인적 비밀(이하 “개인비밀”이라 한다)을 업무 목적 외에 누설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이 규정에 따라 외부에 신용정보를 제공하는 행위는 제1항에 따른 업무 목적 외의 누설이나 이용으로 보지 아니한다.

③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된 개인비밀을 취득한 자(그로부터 누설된 개인비밀을 다시 취득한 자를 포함)는 그 개인비밀이 제1항을 위반하여 누설

된 것임을 알게 된 경우 그 개인비밀을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외부로부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은 경우에는 그 신용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이 규정 및 법률에 따라 제공이 허용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 5 장 보 칙

제15조(벌칙·과태료 및 과징금 등) 이 규정을 위반하거나 이 규정에 명시된 업무사항을 해태하는 경우에는 신용정보법 제42조의2(과징금의 부과 등), 제50조(벌칙), 제51조(양벌규정) 및 제52조(과태료)의 적용으로 벌칙 또는 과태료, 과징금 등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업무 유의사항을 숙지하여 업무 처리하여야 한다.

제16조(손해배상의 보장) 신용정보법 제43조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하거나 준비금을 적립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7조(법령 개정) 이 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이 관계 법령의 개정 등의 사유로 내용이 서로 상충하는 경우에는 법령에 따른다.

제18조(세부사항) 이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 및 기타 이 규정의 시행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요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 칙(제정)

1. 이 규정은 2011년 4월 25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1)

1. 이 규정은 2015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